

의안번호	2210555
의 퇴 인	김종민의원
회 답 일	2025. 6. 20.
추 계 번호	25D29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회가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6억 4,000만원(연평균 7억 2,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 (안 제21조의2 신설)	-	3,595	-	-	-	3,595	719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안 제21조의3 신설)	-	45	-	-	-	45	9
합계	-	3,640	-	-	-	3,640	728

- 주: 1.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안 제21조의2 신설)와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안 제21조의3 신설)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의 전년도에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 500명의 위원,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3. 유사사례인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활용하여 위원 1명당 비용(2018년 기준 589만원)을 산출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2 (선거제도개선 시민위원회) 신 설	국회는 국회의 의원정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의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선거권을 가진 500인 내외로 구성	의무규정
2	안 제21조의3 (선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신 설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시민위원회가 작성한 시민기초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선거제도 관련 학식 등이 풍부한 선거권이 있는 30인 이상으로 구성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조의2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 신설	○	-
2	안 제21조의3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의 전년도에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 500명의 위원,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고, 4월 중순 경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일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의 전년도에 선거제도개선시민회,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인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약 3개월간 운영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와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도 3개월 동안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7.24.~2017.10.20.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2018.4.30.~2018.7.29.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1.9%	2.0%	2.0%	2.0%	2.0%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안 제21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국회가 선거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년도인 2027년에 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를 3개월 동안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인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활용하여 위원 1명당 비용(2018년 기준 589만원)을 산출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471명 위원, 2017년 기준 32억 2,700만원 집행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490명 위원, 2018년 기준 18억 3,200만원 집행
 - 위원 1명당 비용을 2018년 기준으로 산출하면 589만원
 - 위원 1명당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며 2027년 기준 719만원
- 추계결과, 국회가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5억 9,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 수(A, 명)	-	500	-	-	-	-
1명당 비용(B, 만원)	-	719	-	-	-	-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	3,595	-	-	-	3,595

나.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안 제21조의3 신설)

- 개정안은 국회가 시민기초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년도인 2027년에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3개월 동안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50%인 15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
 -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3개월 동안 월 4회씩 총 12회 개최하며 회의 참석 수당은 1회당 25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국회가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500만원으로 추계됨
 -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2027년 4,500만원(=민간위원 15명×12회×25만원)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와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6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	-	3,595	-	-	-	3,595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	-	45	-	-	-	45
합계	-	3,640	-	-	-	3,640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의 전년도에 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 민간위원 15명이 활동하는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